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7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임오경 · 안호영 · 진성준
김현정 · 윤준병 · 박홍배
김재원 · 이기현 · 민형배
조계원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회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픽 회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은 동년, 동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회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장애인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회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55조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업) ① 장애인올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그 문양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④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계약을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업) ① 장애인올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그 문양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②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u> <u>④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상징물</u>

제5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10조제3항, <u>제21조제1항</u>,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⑤ (생략)	<u>을 활용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u> 제5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1조제1항</u>, <u>제21조의2제1항</u>-----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